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도종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039

발의연월일: 2022. 6. 17.

발 의 자:도종환·김철민·권칠승

유정주 • 서영석 • 강병원

조승래 • 안민석 • 유기홍

김정호·서동용·박 정

인재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를, 시·도지사는 시·도무형문화재를 각각 지정하고, 이북5도지사는 이북5도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·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음.

국가와 시·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·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,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나,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건승에 어려움이 있음.

또한, 「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」(이북5도위 원회 훈령)에 따라 이북5도지사가 보유자,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도지사는 지정된 이북5도 무형문화재를 실연하는 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·전승할 수 있도록,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취약한환경에 놓여 있는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전승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36조제3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2항"을 "제2항 및 제3항"으로, "절차"를 "절차, 경비 및 수당의 지급 기준"으로 한다.

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무형문화재를 실연하는 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·전승할 수 있도록, 필요한 경비 및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36조(이북5도 무형문화재) ① | 제36조(이북5도 무형문화재) ① |
| ·② (생 략) | • ②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 |
| | 정된 무형문화재를 실연하는 |
| | 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 |
| | 고 교육・전승할 수 있도록, |
| |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|
| |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|
| ③ <u>제2항</u> 에 따른 이북5도 무형 | <u>④</u> 제2항 및 제3항 |
| 문화재의 지정 <u>절차</u> 등에 필요 | <u>절차, 경비 및 수</u> |
| 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. | <u>당의 지급 기준</u> |